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합515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김지혜]

피고1. B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5. F 주식회사

6. G

7. 주식회사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나상용, 이정욱]

변론 종결2024. 9. 5.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I 사이에 별지1 채무변제계약 목록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증서'란 기재 각 공정증서로 각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900,924,859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주식회사 I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주문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위약금 등 채권의 성립 경위

1) I의 이 사건 부동산 낙찰 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2015. 7. 15.경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소유한 K의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다. I는 2015. 8. 19.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81억 21,316,4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J에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48억 12,131,64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J은 기본재산인 K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K를 40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하며, 허가일부터 12개월 이내인 2016. 2. 26.까지 처분하지 못하면 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고,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처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2) 원고와 I 사이 분양대행계약 체결 I는 K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16. 10. 5.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I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공탁금 3억 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무산될 경우 공탁금의 1.5배인 4억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12.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공탁금 3억 원을 I명의로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의 I에 대한 공탁금 및 위약금 청구의 소 제기 가) 원고는 I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2018.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3513호로 I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공탁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8. 27. I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여 「는 원고에게 6억 원(공탁금 3억 원 및 감액된 위약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2033962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34085 판결, 이하 원고가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I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위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의 위약금 등 채권'이라 한다).

나. I의 선행 사해행위

1) 피고 F을 위한 채무변제계약 체결 가) I는 2016. 12. 2. 피고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 F에 대해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 48억 원을 변제기 2016. 2. 20. 이율 연 2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6년 제579호)를 작성하였다(이하 I와 F 사이의 위 합의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선행 사해행위' 내지 '선행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F은 2016. 12. 12.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20358호로 'I가 J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 중 48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6.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F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6200호로 J을 상대로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소(이하 'F의 전부금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교육부장관의 처분허가의 효력이 기간만료로 상실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J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피고 F에게 4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2021. 4. 21.

선고하였고, 위 판결 부분에 관한 항소, 상고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12238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98970 판결).

2) 선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 가) I의 채권자들인 원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하고, M,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선행 채무변제계약으로 I의 유일한 자산인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이 피고 F에 귀속될 상황이 되자, M은 2018. 11.경, 원고는 2021. 5.경, N은 2021. 6.경 각 「위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며 피고 F은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 또는 이로부터 발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I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나) 원고, M, N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각자의 피보전채권 금액별로 선행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F은 그 금액 상당의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I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M	선행 채무변제계약을 1,017,876,7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피고 F은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J에 대한 4,812,131,640원의 매매대금반환 채권' 중 위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I에게 양도하고, J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부산고등법원(창원)2021. 7. 15. 선고2020나12601 판결(대법원 2021. 10.28. 2021다258265판결로 확정)
원고	선행 채무변제계약을 864,624,6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피고 F은 'J이 202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15617호로 공탁한 4,749,739,726원 중 864,624,65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I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부산고등법원(창원)2023. 9. 14. 선고2022나11985 판결(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90461판결로 확정)
N	선행 채무변제계약을 1,896,624,7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피고 F은 'J이 202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15617호로 공탁한 4,749,739,726원 중 1,896,624,70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I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부산고등법원(창원)2023. 12. 7. 선고2022나14656 판결(대법원 2024. 4. 12.선고 2024다206692판결로 확정)

다. 원고, 피고들의 압류·추심과 J의 공탁

1) 원고 등의 압류·추심 원고 등 I에 대한 채권자들은 M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확정되어 I의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이 다시 O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자 위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M	I의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1,017,876,711원	202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34071호
N	위 매매대금반환 채권 중 1,814,207,517원	2022.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36382호
원고	위 매매대금반환 채권 중 819,980,005원	202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00165호

2) 피고들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및 압류·추심 한편 피고들은 2023. 3.말 내지 2023. 4.초경 I와 사이에 「는 피고들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변제기인 2023. 4.초경까지 채무를 변제하며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 당함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합의를 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피고들과 I 사이의 위 합의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으로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3. 6. 21.경 I의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1B	2023. 3. 31.자 공증인가 P 증서 2023년 제46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22. 3. 31.자대여금 267,731,000원(202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채2202호
2C	2023. 3. 31.자 위 법인 공정증서 2023년 제468호	2022. 3. 31.자대여금 32,860,405원(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채2203호
3D	2023. 3. 31.자 위 법인 공정증서 2023년 제467호	2022. 3. 31.자대여금 152,444,078원(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채2204호
4E	2023. 3. 31.자 위 법인 공정증서 2023년 제466호	2022. 3. 31.자대여금 203,209,894원(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채2205호
5F	2023. 3. 31.자 위 법인 공정증서 2023년 제465호	2022. 3. 31.자대여금 534,429,920원(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채2206호
6G	2023. 3. 31.자 공증인가 P 증서 2023년 제469호 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2023. 4. 5.자 공증인가 P 증서 2023년 제4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22. 3. 31.자대여금 471,570,189원(2023. 4. 7.)2023. 4. 5.자대여금 9,780,523,286원(202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채2207호상 동
7H	2023. 4. 3.자 공증인가 Q 증서 2023년 제76호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19. 2. 27.자공사간접비채무640, 000,000원(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채2210호

3) J의 변제 공탁 가) J은 피고 F의 전부금 청구의 소와 원고 등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연달아 제기되고 위와 같이 원고 등과 피고들의 압류·추심이 경합하자, ① 202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15619호로 「M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확정됨에 따라 I의 채권으로 회복된 10억 17,876,711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0억 17,876,711원을 집행공탁하였고, ② 202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15617호로는 「피고 F이 J에 대해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채권 압류·추심이 존재하므로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압류의 효력이 있는 부분은 집행공탁, 나머지 부분은 변제공탁한다」고 공탁 취지를 밝히며 피공탁자를 피고 F으로 하여 47억 49,739,726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다. ③ 또한 J은 2023. 7. 12.에는 2023년 금제17150호로 「피고 F의 전부명령 범위를 넘어 I가 일부 잔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 잔여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I의 잔여 매매대금반환 채권 12,131,640원에 대해 집행공탁하였다.

나) 피고 F은 2023. 8. 17. 위 ②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 15617호 공탁에 대하여 46억 53,172,407원에 대해 출금청구를 하여 위 공탁금을 출금하였다.

라. 배당사건의 경과

1) 피고 F이 출급한 공탁을 제외한 나머지 위 ①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15619호 공탁금과 위 ③ 기재 같은 법원 2023년 금제17150호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각 같은 법원 R, S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2) 위 법원 R 사건에 관하여 2023. 10. 13. 배당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금제15619호의 공탁금 10억 17,876,711원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 중 피고들이 배당받게 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B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2호)	16,712,817
2	주식회사 C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3호)	2,083,566
3	D 주식회사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4호)	9,665,960
4	E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5호)	12,884,848
5	F 주식회사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6호)	33,886,383
6	G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7호)	648,742,733

1	B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2호)	16,712,817
7	주식회사 H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10호)	39,425,067
계	763,401,374		

3) 한편 위 법원 S 사건에 관하여는 2023. 11. 10.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2023년 금제17150호의 공탁금 12,131,640원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 중 피고들이 배당받게 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B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2호)	162,893
2	주식회사 C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3호)	20,310
3	D 주식회사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4호)	94,210
4	E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5호)	125,584
5	F 주식회사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6호)	330,278
6	G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10호)	2,111,473
7	주식회사 H	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07호)추심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2210호)	6,323,054384,262
계	9,552,064		

마.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각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23.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447호로, 2023. 11. 16. 같은 법원 2023가단5447659호로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 9,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I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위약금 등 채권을 가지는데, I는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무부담의 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교부한 다음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I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I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I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3513호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인용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인 2024. 3. 4. 기준으로 I에게 원리금 합계 9억 3,780,822원¹⁾ 상당의 위약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원금 6억 원 + 위 금원에 대한 2019. 4. 3.부터 2020. 8. 27.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0,498,630원²⁾ 및 위 금원에 대한 2020. 8. 28.부터 2024. 3. 4.까지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억 53,282,192원³⁾ , 갑 제8호증의1 참조]. 원고는 위 인정되는 채권액보다 소액인 9억 924,859원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사해행위를 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은 일응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였던 I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I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에 입찰하기 약 한 달 전인 2015. 6.경 위 입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있었던 2023. 3.경에는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 외에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②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피고 G은 I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피고 F에 취득시키는 선행 사해행위를 하였다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모두 위와 같이 선행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고 등 채권자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직후인 2023. 3. 31. 내지 4. 초경 일괄하여 체결된 것이다.

③ 특히 I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은 대부분 I 내지 선행 사해행위를 하였던 피고 G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피고 G은 2015. 7.경 I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경 I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2023. 3.경 I의 대표이사였던 T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피고 F은 피고 G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경영하던 회사로 선행 사해행위 시에도 상대방이 되었던 회사이다. 피고 B은 I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E은 피고 G의 아들이다. 피고 C은 피고 G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G의 아들 U이 사내이사인 회사이다.

④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이처럼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익자들을 위하여 같은 시기에 체결된 것이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던 상황에서 합계 120억 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일괄하여 승인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으로 작성된 각 공정증서에는 피고들과 I 사이의 계약서 원본이 아닌 공증인 작성의 '소비대차 계약 증서'만이 첨부되었으며 각 피고들의 채권 변제기가 모두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7 내지 10일 후로

작성되었던바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새롭게 작성된 서류임이 명백하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I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거나 채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전적으로 피고 G 내지 I의 의사에 따라 피고들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의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되었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체결 경위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I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내용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적극재산인 I의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취득시킬 목적으로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그 실질에 있어 I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J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액이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종결일인 2024. 9.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이보다 더 다액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I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9억 924,8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가 확정되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이전에 이미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받아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배당표가 이미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의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R, 같은 법원 S로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금을 배당받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제기한 각 배당이의의 소가 이 법원에 2023가합91447호, 2023가단5447659호로 각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배당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에 의해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배당표를 재조제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확정되지도 않은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를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억

924,85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이상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찬우

판사전준영

판사정문기

별지

1) 50,498,630원 + 253,282,192원

2) 6억 원 × 512일 × 6% / 365 = 50,498,630원

3) 6억 원 × 1284일 × 12% / 365 = 253,282,192원